

[업무상배임손해배상] 대표이사 퇴직 후 경쟁업체 설립 + 직원들 동반 퇴직 및 이직 +
영업비밀침해분쟁 + 업무상 배임행위 여부: 서울고등법원 2018. 4. 19. 선고 2017나
2052666 판결



해외 화물 운송업체 사주와 대학동창인 대표이사 사이에 분쟁에 발생하여 대표이사가 회사를 퇴직하고 경쟁회사를 설립하면서 전 회사의 사원들이 같이 옮긴 사안입니다. 쌍방이 격렬한 법적 쟁송을 벌인 사안인데, 그 중에서 퇴직한 대표이사와 이직한 직원들에게 거래처 정보, 인보이스 자료, 거래처별 견적, 운송단가 등 경영상 정보유출에 대한 영업비밀침해 및 업무상 배임의 책임을 추궁한 부분입니다. 판결문에 형사사건의 경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. 여기서는 업무상 배임 책임부분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.

1. 영업팀장 - 인쇄물 5~10 장 분량의 거래처, 견적서 등 자료 관련 판단 - 배임의 고의 또는 과실 불인정 + 책임 부정

갑 제63, 6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 E은 원고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영업에 필요하여 거래처 및 견적서 등이 있는 화주리스트를 인쇄한 A4용지 5~10장 분량의 인쇄물을 개인자료들과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퇴사시 개인자료와 함께 가지고 나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,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피고 E이 퇴사시 개인자료를 가지고 나올 때 위 인쇄물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, 피고 E이 위 자료를 유출하려고 하였다면 화주리스트 인쇄물 5~10장이 아니라 파일 자체를 복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, 피고 E이 위 인쇄물을 피고 F의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, 피고 E의 위 화주리스트 인쇄물 유출 자체가 위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E에게 불법행위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.

2. 전직 직원이 회사의 경영상 정보를 USB 저장 후 유출 및 활용 - 업무상 배임 책임 인정

전산보안서약서 서명 "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퇴직 시 위 정보를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, 퇴직 후에도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해 일체 누설하지 않겠습니다." + 회사 경영상 자료(화주내역서, 수출 인보이스, 운임내역서 등)을 USB에 저장하여 퇴직 시 가지고 나와 새로운 회사에서 영업에 활용함.

형사절차 - 업무상 배임죄 인정 + 벌금 약식 명령

전직 회사의 고객 이탈하여 신규 경쟁업체로 이동 + 전직회사의 매출 급감

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: “화주내역서, 수출 인보이스, 운임내역서는 비록 영업비밀로 관리

되어 온 것은 아니나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

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

로 ‘영업상 주요자산’에 해당하고, 직원들은 퇴사 시 전산보안서약서 등에 따라 위 자료

를 반환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위 자료를 수집, 무단 반출

하여 영업에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

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”

+ 판결문 중 구체적 손해액 산정방법 부분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
첨부: 서울고등법원 2018. 4. 19. 선고 2017나2052666 판결

영업비밀, 기술유출, 경업금지, 전직금지, 민형사소송, 다수사건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kkh@kasanlaw.com H. www.kasanlaw.com